

# 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9 - 15 호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6월 3일  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유사기능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(안 제1조)
- 나.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(안 제2조)
- 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명시(안 제3조)
- 라. 위원의 위촉해제 신설(안 제5조의1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역보건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건강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  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 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
4.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20인”을 “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”으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지역주민 대표
2. 학교보건 관계자
3. 산업안전·보건 관계자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5. 관계 공무원
6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

제4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사무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한다.

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1(위원의 위촉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정기회의와”를 “정례회의와”로 하고, “정기회의는 년2회”를 “정례회의는 연1회”로 하고, 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를 “필요에 따라”로 하고,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”를 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단서 중 “관련하여”를 “관련되어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사항외”를 “사항 외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른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’”를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’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,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</li> </ol>

3.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
4.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5. <신 설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구민,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,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가에 관한 사항
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

4.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-----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-----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지역주민 대표
2. 학교보건 관계자
3. 산업안전·보건 관계자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6조(회의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5. 관계 공무원

6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 
-----.  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 
----- 사무  
-----.

② -----  
--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-----.

제5조의1(위원의 위촉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정례회의와 -----  
----- 정례회의는 연  
1회 -----  
필요에 따라 -----.

③ (생략)

④ 삭제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.

제8조 (생략)

제9조(공청회 등 개최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간사) -----  
-----1명을-----  
-----.

제8조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공청회 등 개최) -----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-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수당 등) 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.  
----- 관  
련되어-----  
-----.

제11조(운영세칙) -----  
사항 외----- 필요  
-----  
-----.